

특

집

전력기술관리법 안내

—• 자료정리/출판홍보과 •—

14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다.

이번 제177회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법안만해도 171개, 접수된 총수는 343개이나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아예 심의조차 되지않아 자동폐기됐다.

1995년 12월 18일 정기국회에서 「전력기술관리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등으로 분산 적용되던 전력기술인에 대한 관리가 모두 이 법에 수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기술자들에게 설계·감리 등 독립권을 인정하고, 공체사업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기술인들의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회원들의 이해를 돋기위해 「전력기술관리법안 심사보고서」와 「전력기술 관리법」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전력기술관리법안 심사보고서 (1995. 12 통상산업위원회)

성환·이강두·이웅희·이재명·이재환·이택석·이현수·조순환·조용직·황의성의원(26명):
가나다순

1. 심사경과

나. 회부일자: 1995. 12. 9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12월 8일

다. 상정일자: 제177회 국회(정기회)

김범명·김운환·김종하·김채겸·김호일·노
인환·류승규·류인학·박광태·박우병·박제
상·반형식·서훈·성무용·송천영·안동선·유

제7차 통상산업위원회(1995. 12. 14)
상정, 제안설명, 겸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성무용 의원)

가. 제안이유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력기술의 개방화·전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3조).
- (2)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9조).
- (3)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되,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 설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자격이 있는 자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4)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등록된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 (5)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4조).
- (6)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해성)

가. 제안배경

건축, 소방 등 다른 분야의 경우 설계·감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실정에 있으나, 전력분야는 그 설계·감리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음으로 인하여 전기설비의 불량비율과 재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건축물은 정보시스템, 조명, 냉난방, 환경 등을 고도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하여 「인텔리전트 빌딩」을 건설함에 따라 외국의 전문전기설계를 선호하고 있어 전력분야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법안은 전기에 의한 재해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를 담당케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기술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전력기술의 전문화·개방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생각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1)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안 제3조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에는 전력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전력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 전력기술진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은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전력기술의 진흥에 애로가 있어 전력시설물의 대형화, 첨단화에 전력기술수준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94년에 발생한 전기재해는 8,619건으로서 재산피해는 314억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전기설비의 불량비율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전력첨단기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법안에서 전력기술진흥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동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데 있다고 봄.

2) 전력기술기준(안 제9조 · 안 제10조)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의 명확화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뿐아니라 각종 검사의 판정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법안에서 기술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전기공사에 있어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하겠음.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기술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적정한 기술기준을 마련하려는데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은 학계, 연구계, 산업체 등 관련업계의 전력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안 제19조에서는 설계사와 감리원은 전력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와 감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설계사와 감리원이 기술기준을 준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봄.

(3)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작성(안 제11조, 부칙 제3조 제1항)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 설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는 자로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의 작성자를 명문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에게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기술사 자격을 가진 인력(425명)으로는 설계업무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일정자격을 가진 전기기사에게 설계사면허를 주어 이들로 하여금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 설계를 담당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설계사면허를 받은 전기기사가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에 한정하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나 자가용 전기설비 중 소규모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수 없도록 일정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 설계를 설계사면허를 받은 전기기사가 담당토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설계사면허를 받은 전기기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은 설계사면허제도는 실질적으로 전기기술사의 설계업무를 설계사면허를 받은 전기기사가 담당하게 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설계사면허발급기준 및 대상 등을 정할 때에 일

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사면허발급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안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동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도서작성은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 설계도서에 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본법안에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4) 공사감리 등(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안 제12조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완벽한 공사감리로 전력시설물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부는 시행령 제정 시에 전력분야에 관한 전문분야별 기술경험이 풍부한 자가 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안 제13조에서는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사감리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한 것은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전기로 인한 재해발생을 감소시키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안 제14조에서는 설계업과 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

고 있는데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전기공사를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업과 감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전력기술인이 아닌 사람이 설계업과 감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전기분야기술제 자격취득자가 아니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감리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봄.

다만, 설계업과 감리업을 등록제로 할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신고제와 상충이 되고, UR엔지니어링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양허(讓許)내용과 상치되어 통상마찰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설계업과 감리업등록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WTO협정내용의 확인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5) 한국전력기술인협회(안 제18조·제19조)

안 제18조에서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전기기술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를 전력기술인으로 통합하여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 협회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협회의 주요사업은 전력기술인의 자격확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개발, 공제사업 등임.

특히 공제사업은 영세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자금융통을 해주려는 것으로 공제사업의 운용에 따라서는 많은 회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제사업에 필요한 공제규정은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협회의 사업중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 김리원의 자격확인, 설계사의 면허발급 등은 회원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협회는 시행과정에서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협회는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사의 총집결체인 만큼 다원화되어 있는 기술등급 및 기술종류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 한편 협회에 부여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협회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칙 제3조 제2항)

안 부칙 제3조 제2항에서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7항을 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제45조 제7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 또는 해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본법안에서는 확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법률개정은 당해법률안에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협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전기사업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법개정법률안이 제출되고 있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확인을 협회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법안에서 동 법률을 개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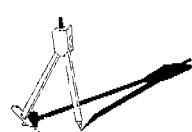
는 것은 예외적인 범위에 속한다고 봄.

다. 종합의견

현행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감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설비 설치자의 경우는 그 소속직원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기술사의 경우에는 건축사로부터 하청받은 건축사보(전기기사)가 이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 등 그 담당자에 대한 기술자격·경력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없이 임의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이는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본법안이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기술에 관한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전력기술의 전문화에 부응하여 부실공사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전력기술의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특히, 현재 민법상의 법인인 대한전기기사협회가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법정단체화함으로써 전력기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동협회가 전기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사를 망라하는 단체이고 그 업무범위가 광범위함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199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수성

국무위원 통상산업부장관 박재운

法律 第5,132號

電力技術管理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법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電力技術水準을 향상시키고 電力施設物設置의 적정을 기하여 公共의 安全을 확보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電力技術”이라 함은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이하 “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計劃·調查·設計·施工 및 監理와 완공된 電力施設物의 유지·補修·運用·관리·安全·診斷 및 檢查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工事로 造成되는 施設物과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爐 및 그 관계 施設은 제외한다.
- “電力技術人”이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 技術系와 技能系의 技術資格取得者 및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設計”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에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工事監理”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에 대하여 發注者の 委託을 받은 監理業體가 設計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 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關係法令에 따라 發注者の 權限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監理員”이라 함은 監理業體에 종사하면서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第2章 電力技術의 振興

第3條(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의 수립) ① 通商產業部長官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電力技

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力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추진방향
2. 電力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시책
3. 電力技術人의 養成 및 需給에 관한 사항
4. 新로운 電力技術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電力技術의 情報管理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6. 電力技術을 研究하는 機關 및 團體의 指導·육성에 관한 사항
7. 電力技術의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8.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한 資金支援에 관한 사항
9. 기타 電力技術의 振興에 관한 사항

③ 通商產業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基本計劃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4條(研究機關 등의 육성 등) ① 通商產業部長官은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電力技術을 研究·開發하는 機關 및 團體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의 범위와 그 指導·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研究課題의 선정 등) ① 通商產業部長官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에 관한 研究課題를 선정하고 研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課題의 선정 및 研究할 者의 지정과 研究費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電力技術의 研究·開發 등의 권고) 通商產業部長官은 新로운 電力技術의 研究·開發 및 導入을 위하여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研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 共同研究 및 情報交換·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通商產業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力技術人協會
3. 電力技術關聯團體
4. 電力關聯學術團體

第7條(電力技術人力의 관리 등) ① 通商產業部長官은 電力技術人力의 效率적 활용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와 教育訓練 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서 실시하는 教育訓練을 받아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訓練을 받아야 할 者를 고용하고 있는 使用者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이 그 教育訓練을 받는데 필요한 經費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와 教育訓練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電力技術審議委員會) ① 電力技術에 관한 다음 각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通商產業部에 電力技術審議委員會를 둔다.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基準에 관한 사항
 3. 기타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通商產業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電力施設物의 設計 · 監理

第9條(電力技術基準) ① 電力施設物의 設計 · 監理 · 檢查 · 點檢 및 관리에 필요한 電力技術基準(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通商產業部令으로 정한다.

② 通商產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基準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電力技術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技術基準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0條(기술기준의 遵守)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士는 電力施設物이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設計하여야 한다.

② 監理員은 設計圖書 · 關聯規程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를 하여야 한다.

第11條(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의 작성 등) ①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通商產業部令이 정하는 標準設計圖書와 新工法 · 特殊工法을 적용한 設計圖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一般用電氣設備의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의 技術資格取得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士免許를 받은 者가 작성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를 작성한 電氣分野技術士 · 設計士 및 設計業者(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監理를 받아야 한다.

⑤ 電力施設物의 設計用役은 設計業者에게 發注하여야 한다.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 및 設計士의 業務範圍, 設計圖書의 보관, 設計士의 免許發給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工事監理 등) ① 電力施設物의 設置 · 補修工事 發注者(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電力施設物의 設置 · 補修工事의 品質確保 및 향상을 위하여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監理를 發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力施設物의 設置 · 補修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은 者가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對象인 設置 · 補修工事의 範圍 및 監理員의 資格 · 資格證發給 · 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를 행하는 監理員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電力施設物의 設置 · 補修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의 實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產業部令으로 정한다.

第13條(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 등) ① 監理員은 工事業者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電力施設物의 設置 · 補修工事を 시공하는 경우에는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지시를 받은 工事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監理員이 工事業者에게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工事의 發注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發注者는 監理員으로 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4條(設計業·監理業의 登錄 등)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營業의 種類別로 通商產業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1. 電力施設物의 設計業(이하 “設計業”이라 한다)

2.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이하 “監理業”이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種類와 種類別 登錄基準·營業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設計業 및 監理業의 登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產業部令으로 정한다.

④ 設計·監理의 用役代價는 通商產業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의 技術資格取得者를 代表者로 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エンジニアリング技術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エンジニア링活動主體로 申告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產者·限定治產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違反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 기간중에 있는 者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6條(登錄의 取消·營業停止) 通商產業部長官은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通商產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偽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때
3. 設計 또는 監理業務遂行中 他人에게 人命 또는 財產上의 被害를 끼친 때
4. 第15條 第1號 내지 第4號의 1 또는 同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 6月 이내에 代表者를 變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6. 他人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때

第17條(休業 등의 申告)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한 때에는 通商產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通商產業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章 韓國電力技術人協會

第18條(韓國電力技術人協會의 設立) ①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電力技術人 등은 電力技術의 研究·開發을 촉진하고 電力施設物의 質的向上과 電力技術人의 品位維持·業務改善·教育訓練·指導 및 관리를 위하여 通商產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電力技術人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③ 協會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④ 協會의 定款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通商產業部令으로 정한다.
- ⑤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9條(사업) ① 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 1. 電力技術人의 經歷確認
 - 2. 電力技術人·設計士 및 監理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訓練
 - 3. 電力技術에 관한 調査·研究·開發·出版 및 弘報
 - 4. 電力施設物의 診斷·技術指導 및 事故調查分析
 - 5. 附設技術研究院의 設置運營
 - 6.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의 選任·解任 申告業務
 - 7. 會員의 업무수행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보장 및 會員에 대한 資金의 融資 등을 위한 共濟事業
 - 8. 기타 通商產業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 ② 第1項 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 通商產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共濟規程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第2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내용·共濟金·共濟料 등 共濟事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第20條(會員) ①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는 協

會의 會員이 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者·監理業者와 그 業體에 소속된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
2. 電氣事業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安全管理擔當者로 選任된 者
3. 電氣工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事業體에 소속된 電力技術人
- ② 第1項의 規定에서 정한 者 외의 電力技術人도 申請에 의하여 會員이 될 수 있다.

第21條(任員) ① 協會의 任員은 會長 1人, 副會長 2人을 포함한 10人 이상 20人 이내의 理事와 監事 2人으로 한다.

- ② 會長 및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다만, 會長 및 常勤任員은 通商產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會長·副會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각각 連任할 수 있다.

第22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가 아니면 그 명칭에 “韓國電力技術人協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章 捕 則

第23條(監督) ① 通商產業部長官은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業場에出入하여 關係書類·施設 등을 檢查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出入 및 檢查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4條(祕密維持) 이 法에 의하여 設計 또는 監理를 행하는 者는 業務상 알게 된 祕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電力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通商產業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條(聽聞) 通商產業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條(手數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通商產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訓練을 받고자 하는 者
2. 第1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士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
3.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고자 하는 者
4.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第27條(權限의 위임 委託) 通商產業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第六章 罰則

第28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監理를 發注한 者
2.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 再施工,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詐爲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한 者
4.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監理를 業으로 한 者
5. 設計業者 또는 監理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을 받고 그 營業停止 기간중에 營業을 한 者
6.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 된 祕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第29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处한다.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 또는 監理를 실시함에 있어 技術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2. 第11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한 者
3. 第11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監理를 받지 아니한 者
4. 第11條 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用役을 發注한 者
5.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한 者. 정당한 사유없이出入・検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30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处한다.

1.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訓練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者
2. 第7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經費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者

3. 第1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에 署名 摺印을 하지 아니한 者
4.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義務를 위반한 者
5.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第22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韓國電力技術人協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商產業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通商產業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通商產業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通報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중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第31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詐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協會의 任職員과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행하는 監理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大韓電氣技師協會(이하 이 條에서 “技師協會”라 한다)는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通商產業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技師協會는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中 法人の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技師協會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가 承繼한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電氣工業業法中 나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 第2項을 刪除한다.

② 電氣事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 第7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事實을 通商產業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하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事實을 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 申告하여야 하며”로 한다.

第4條(設計·監理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律에 의하여 電力施設物에 관한 設計·監理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法에 의하여 設計·監理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